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제 2.4 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 다. 상품무역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5.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과도기간의 첫 해에 적용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한쪽 당사국은 제1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든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는 그 당사국이 이 조에 규정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8.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9.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할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 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적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잠정 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잠정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협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잠정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협의가 개최될 수 없는 경우, 협의는 잠정 조치의 적용 후 즉시 개최된다.

4. 모든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그 당사국은 제7.2조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조치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그 조치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권한 있는 조사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 비중, 수입 비중의 변화, 그리고 수입 수준 및 수입 수준의 변화와 같은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7.6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권한 있는 조사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경우, 경제산업부 산하 무역관세위원회 또는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그에 상응하는 기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7.7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 협정”이라 한다)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관련 세계무역기구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잠정 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제7.9조

약속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른 가격 약속의 접수를 위한 절차를 유지한다.

제7.10조

최소부과 원칙

당사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피ング 또는 상계 가능 보조금 마진을 초과하지 않고,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7.11조

공공이익의 고려

양 당사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12조 제로잉의 금지

반덤핑 협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교 기준과 관계없이, 반덤핑 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제7.13조 공청회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절 제도 규정

제7.14조 상품무역위원회

양 당사국은 제2.17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 내에서 이 장에 관한 사안을 논의한다.